

반부패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Anti-Corruption Measures in
Hong Kong, Malaysia, Singapore and South Korea

김 택 (Kim, Taek)*

ABSTRACT

The author begins by arguing that those Asian countries which are able to reform regulations and curb corruption will be successful in the 21st century as there will be no competitive business companies or national development if corruption is rampant. This article suggests the importance of studying the experiences of Singapore, Hong Kong and Malaysia in combating corruption.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compares the anti-corruption measures in these countries and focuses on the role played by Singapores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Hong Kongs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Malaysias Anti-Corruption Agency. The author contends that South Korea can improve its ability to combat corruption by drawing relevant lessons from the successful experiences of these three Asian countries.

*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Faculty Fellow of American University (行·博)

I. 서 론

현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민을 주인으로 섭겨 성실하게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선언은 그동안 정통성이 없는 역대정권에서 정권교체를 이루한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국가의 구약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 정의를 추구하는 규범적 사명과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은 정책집행과 통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관료들의 책무를 외면하고 소수권력엘리트들의 거대한 부패를 용인한다면 사회의 불신과 혼란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부적절하고 부당한 부패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반부패 세력이 거대한 파도를 형성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소용돌이의 장에 추락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한국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부패는 국가관리의 기반이었으며 개발시대의 윤활유(Lubricant)역할을 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정통성 없는 정권하에서 관료들은 부패 문화속에 안주하였다. 부패는 위낙 복잡하고 빙하의 수면하에 있는 괴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부패 전략은 쉽게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난마처럼 얼린 부패의 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정부나 현정부에 있어서 부패방지 대책의 공통점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를 청산하는 것은 개혁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제를 파괴하고 신체제로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제도적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제 한국부패는 부패학자 케이든의 지적처럼 Systemic Corruption 이라고 보면 이의 해법은 강력한 법규와 기구를 통해 사회의 정의와 합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아시아 국가중 비교적 투명하고 반부패에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진 홍콩과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조사청(ACA), 홍콩의 廉政公署(ICAC)와 싱가포르의 反貪污調查局(CPIB)을 분석하였는데 그 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셋째. 한국부패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특히 반부패제도 및 방지체계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조사청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의 전문가와 수사관계자를 면담하였으며 연구문헌과 입법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II. 국제적 반부패 동향

부패 현상을 보는 시각은 1960년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즉 부패를 마치 발전과정상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필요악(necessary evils) 적인 부산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1970년대에 와서는 후기기능주의(post-functionalist)적 시각에 의하여 부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인데 특히 1980년대 이후에서는 부패현상을 두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수한 현상이며 상호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그 양자의 변수를 보완적으로 보는 통합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김영종, 1993) 오늘날 부패는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와 배치된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부패에 의하여 상승한 거래 비용은 시장왜곡을 키우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한때 냉전하 권위주의적 개도국에서 부패와 뇌물을은 기계를 원활히 돌리는 윤활유이자 필요악적인 지대(rent)라는 해석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부패의 폐해를 지적하는 해석들이 다수론이다.(Mauro, 1995 Tanzi, 1998)

IMF재정분과 위원장 탄지(Vito Tanzi)는 사회적 행동 규범(특히 행정적 규칙)이 깨지는 것을 부패라고 정의하면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공적업무와 사적이익이 일정한 간격(arms-length)을 유지하지 못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탄지에 의하면 거래관계에서 公私의 구분이 명확할 때 효율적인 시장거래가 가능하고 공공이익도 최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유상영, 1999) 하지만, 연고주의나 가족주의 등에 기인한 행동 이외에도 국가적 자원 왜곡을 초래할 행위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부패(corruption)는 국가공무원이나 준공공기관들이 상거래에서 사적 이익에 기반한 재반 렌트(quasirents)를 추구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적이익의 성격에 따라 행정적(관료적) 부패와 정치적 부패 등으로 유형화되기도 한다.(Tanzi, 1995)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소위 소련과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쇠퇴가 부패의 요인으로 말미암은 현상으로 보았다. 특히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빈곤문제가 부패와 연관시키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패가 자국의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세계 각 국가들은 반부패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지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도표1-1참조) 1994년 5월에 OECD에서는 "국제적 영업거래에 있어서의 뇌물방지에 관한OECD각료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가 채택되어 회원국들은 국제 영업거래에 있어서 타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제공 등의 방지와 함께 외국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금전적인 혜택과 이권을 뇌물로 보아 금지하는 권고 안을 채택하였고 1996년 5월에는 호주를 포함한 여러 공업국가에 존재하는 해외 공여 뇌물에 대한 조세공제제도를 폐지, 국제회의를 통해 뇌물증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설립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

다.(Peter Rooke, 1996) 또한 1997년에는 OECD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부패문제가 세계경제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 하에 상대국 정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면 처벌하는 부패라운드를 발효시켜 1999년부터 전OECD회원국이 법제화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된 외국 공무원의 뇌물 방지법의 영향으로 공여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처벌하며, 뇌물이익의 2배를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무역이나 해외투자에 관해 국제 거래상 제재 조치를 가하는 윤리라운드도 1995년 미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선량한 국제기업 관행 프로그램(Best Global Practice)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IMF체제하에 있는 각 국가들에게 기업재무자료의 투명화, 주주집단 소송제, 연결재무제표 폐지, 사회이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권고하여 기업의 부정 부패 관행에 쇄기를 박았다. 최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 중 활발하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이 기구는 국제 투명성 위원회(Trans parency International)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93년에 발족한 TI는 불과 3년만에 세계 50여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확보하였고 각 국가의 부패추방을 위한 실행계획 (action plan)을 전개하고 있다. (peter Rooke 19996, P. 2~26) 특히 TI는 '국가 청렴도 감사'의 개념에 의하여 매년 조사하는 각국의 부패지수의 발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반부패 정책의 촉매제로서 작용하게 하고 있다.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된 외국 공무원의 뇌물 방지법의 영향으로 공여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처벌하며, 뇌물이익의 2배를 벌금으로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무역이나 해외투자에 관해 국제 거래상 제재 조치를 가하는 윤리라운드도 1995년 미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선량한 국제기업 관행 프로그램(Best Global Practice)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IMF체제하에 있는 각 국가들에게 기업재무자료의 투명화, 주주집단 소송제, 연결재무제표 폐지, 사회이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권고하여 기업의 부정 부패 관행에 쇄기를 박았다. 최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 중 활발하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이 기구는 국제 투명성 위원회(Trans parency International)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93년에 발족한 TI는 불과 3년만에 세계 50여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확보하였고 각 국가의 부패추방을 위한 실행계획 (action plan)을 전개하고 있다. (peter Rooke 19996, P 2-26) 특히 TI는 '국가 청렴도 감사'의 개념에 의하여 매년 조사하는 각국의 부패지수의 발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반부패 정책의 촉매제로서 작용하게 하고 있다.

III. 아시아 국가의 반부패제도

부패척결에 주력하는 국가는 새로운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구를 강화하

여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부패방지기구에 충분한 예산과 인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수사, 기소권과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청, 말레이시아의 반탐오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척결작업에 나서고 있다. 즉 아시아 국가의 부폐통제는 주로 부정부패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규정과 법집행에 있다. 또한 반부패에 관한 관련법이 이미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법집행이 되질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국가중 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의 강력한 반부패 법규 및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홍콩

1) 배경

1970년대 중반전까지 홍콩은 부정부패로 사회가 혼란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홍콩에는 사회의 부패상을 반영하는 유행어가 인구에 회자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버스에 타거나”(부정부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의미)“버스와 함께 달려가는”(부패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방관자가 된다는 의미) 그리고 “버스앞에 서는 것”(부패를 보고하거나 부패에 저항하는 것으로 함) 인데 앞의 두가지 유행어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마지막 유행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으로 여겼다.(Manion, 1996)

홍콩은 지난 1948년에 부폐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Ordinance)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입법국회의원, 공기업과 사기업의 종업원, 정부의 관료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부폐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5년에서 \$10,000의 벌금을 쳐하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지부(Anti Corruption Branch)라고 하는 특별기관이 경찰부(Police Department)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1957년에 부폐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rruption)를 설치하였고 1960년에 집행부와 입법부 위원까지도 포함 시켰다. 1971년에는 뇌물방지법(The Prevention of bribing ordinance)이 입법화 되었다. 이 법에서는 공무원이 적절하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부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 공무원이 자기자신의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보았다. 1971년 영국에서 과견된 홍콩총독 맥클로스(Marry Maclehose)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1974년 2월에 염정공서 설치 근거법(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Ordinance)을 마련하였고 이에따라 염정공서(ICAC: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란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였다. 염정공서는 설립시 중국인의 관습이나 관례에 어긋난다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그후 홍콩정부는 염정공서 법규의 실시로 부정과 부폐가 일소되었고 공공분야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염정공서는 부폐사건의 수사 및 조사권 . 사법권 및 구속권이 있고 . 시민들에게 반부패 교육 예방 및 출판

〈표 3-1〉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및 활용

추진과제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기구명	부속위원회		
경제 협력 개발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	국제상거래 뇌물 작업반 운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세액공제 금지와 형사처벌원칙 합의(리우회의, 1996)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1998.12제정)
	원조개발위원회(DAC)	자금감사, 부패국지원중단	
	자본이동과 보이지 않는 거래위원회(CMIT)	자본자유화 및 돈세탁문제	
	행정개혁위원회(PUMA)	행정개혁,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위원회(CFA)	탈세방지 및 세정개선	
	금융시장위원회(CFM)	회계투명화, 부채관리	
	경쟁법과 경쟁정책위원회(CCLP)	국제적 경쟁을 확립	
국제통화기금(IMF)	기업지배구조 개혁기아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권고	부패국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작업반(WGTGP)	부패로인한 금융시장 왜곡감시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작업반(WGTGP)	뇌물로 인한 해외기업 차별 감시	정부조달협정(AGP, 1994)
	국제연합(UN) 불법적 금품지급 방지 국제협정 위원회(CIAIP), 국제무역법의원회(UNCITRAL)	개도국의 Good Governance 구축과 반부패노력지원	Coporate governance 개혁을 위한 OECD-IBRD 공동선언(1999)
미국	국제투명성위원회(TI)	1970년대초 광의의 불법금품에 대한 국제적 논의시도	국제비지니스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1996.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모범답안(1995)
	국제반부패회의(IACC)	부패지수(CPI) 발표	국가청렴시스템 제시
	미주기구(OAS)	홍콩의 염정공서가 주도	리마선언(1997)
유럽연합(EU)	미주지역내 사법공조, 범인 인도, 불법적 재산증가 감시	미주지역내 사법공조, 범인 인도, 불법적 재산증가 감시	범미주반부패협약(1996)
	유럽평의회(CU)	국제적 자금세탁금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도 범죄화하자는 결의	부패통제와 협력을 위한 결의(1995)
유럽연합(EU)	국제적인 부패방지 노력 주도, 미국반부패 규정과 경쟁 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부패방지 노력 주도, 미국반부패 규정과 경쟁 법의 역외적용	해외부패관행법(FCPA, 1977)
	유럽연합(EU)	유럽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금지와 부패제재 노력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1995)
	유럽평의회(CU)	압력에 의한 부정거래와 민간의 뇌물을 모두포함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수색과 몰수에 관한 협약(1990)

자료 : 류상영, 부패라운드와 정부·기업 관계,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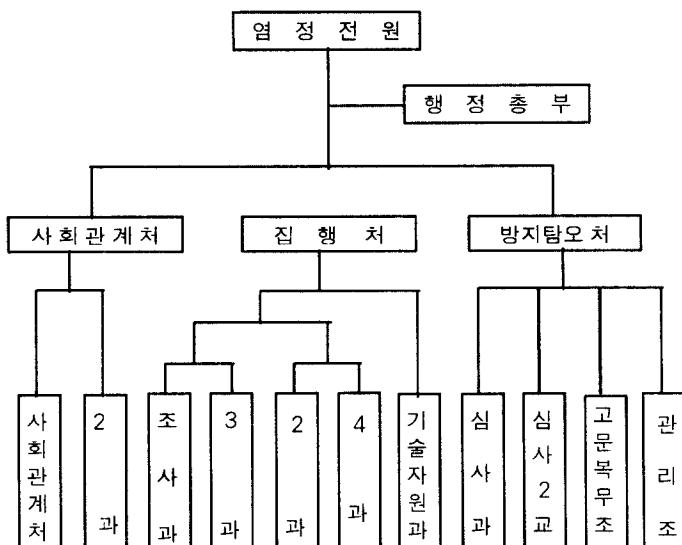
발간, 훈련 등의 홍보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홍콩정부의 정의와 공정한 사회의 률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2) 염정공서(廉政公署) 조직 및 기능

염정공서의 조직은 3개의 부서로 이루어졌는데 부패방지처, 사회관계처, 조사부로 구성되었다. 부패방지법에 의거 그 권한이 부여된 염정공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표 3-2 참조)

첫째, 염정공서는 부패죄목혐의자나 부패에 관계된 여타 범죄에 관하여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둘째, 염정공서의 장인 커미셔너나 부커미셔너는 공과 사를 불문하고 부패행위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셋째, 염정공서의 장인 커미셔너나 부커미셔너는 은행이나 회계 등의 업무에 관하여 서명된 계좌추적권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넷째, 커미셔너나 부커미셔너는 염정공서 관리들에게 어떠한 뇌물도 제공받을 수 없도록 서약을 하도록 한다.

〈표 3-2〉 염정공서조직체계



자료 : 염정공서 1999년 Annual Report

염정공서의 사회관계부는 언론매체나 교육제도를 담당하는데 염정공서의 기구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조직이다. 사회관계부는 일반행정, 인사관리, 재정보급, 사회관계리서치행

위. 훈련, 교육, 직원복지 등을 담당한다.

부패방지부는 가장 작은 규모로서 공공분야와 사적분야의 부패 제공 기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염정공서 커미셔너는 총독에 의해 임명되고 인사위원회에 독립된 상태에서 채용된다. 염정공서직원들은 다른 정부 부서에 전직 할 수 없다. 염정공서 법규는 운영 부서의 장은 그의 부하들이 의심받는 행위를 제한하도록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계좌를 검사하고 의심스러운 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그의 재산변동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게 한다. 더욱이 염정공서직원들은 동료직원에 대한 체포, 구금, 조사뿐만 아니라 염정공서훈령에서 제시된 위반 죄에 관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염정공서 직원은 인사이동이 없고 여타 관리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3) 공무원 윤리규범

홍콩의 뇌물방지법과 이익 및 향응 수수에 관한 총독령에 따라 홍콩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수일, 1999)

먼저 홍콩에서는 총독의 허락을 제외하고는 현금, 유가증권,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기업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선물(금전 기타), 할인, 대부 및 항공권, 승선권, 승차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친구로부터의 금전차용액수가 HK\$2,000을 넘지 말아야하고 반드시 14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세째,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허락되지 않는 선물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넷째, 소속 기관장은 공무원이 이미 수령한 이익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받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섯째, 이익 향응 수수에 관한 총독령을 위반한자는 뇌물방지법의 처벌 규정에 의하여 HK\$100,000 및 징역1년을 부과할 수 있다.

4) 염정공서 문제점

염정공서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함으로써 한동안 각광을 받았지만 비난도 감수한 적이 있었다. 염정공서가 경찰조직의 부패망을 파헤치려는 시도가 경찰기관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1977년 1월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취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추락하였으며, 중국정부 반환이후 중국인의 사업거래로 인한 부패의 기회가 증가하는데 따른 염정공서의 활동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Financial Times, 1997)

2. 싱가포르

유교문화권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함께 예외없이 공직자 부패라는 난제에 부닥친다. 그러나 유독 싱가포르만은 지난 65년 완전 독립한 이래 깨끗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채 연9%대의 실질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리콴유(李光耀) 전총리와 고촉통(吳作棟) 총리 중심의 인민행동당이 40여년 동안 집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깨끗한 정치」를 실현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자금이라는 말도 없다. 집권당인 인민 행동당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으로, 중앙당 유지·운영비는 당원 회비로 충당하고 지구당의 경우 바자 개최·유치원 운영 등과 같은 부대사업으로 돈을 조달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엄격한 도덕기준이 적용된다. 1965년 리 전총리의 오른팔이었던 탄키아칸 국가개발장관이 미 보잉사 커미션문제로 가차없이 처벌 받았는가 하면 76년에는 리 전총리의 학교 동창이자 국무장관이었던 위툰분이 부패혐의로 투옥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부패에의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싱가포르 행정부처들의 업무나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감독의 강화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관료들에게 높은 급여·상여금, 그리고 체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패의 유인기를 상쇄시키고 있다.(QUAH, 1995 1999) 리콴유나 고촉동 등 최고지도층의 반부패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다. 리콴유 스스로 『개인재산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야당들도 그를 부패 문제로 공격한 일은 아직 없다. 서방언론도 그의 독재체제를 비판할지언정 청렴성 문제에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1937년에 제정된 싱가포르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은 1960년에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반탐오조사국(CPIB) 의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 하였는데 반탐오조사국(CPIB)의장은 싱가포르 국가원수에 의하여 임명되고 부패사건에 관해 영장없이 부패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부패사건 관련자는 최고 7년까지의 징역형과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탐오조사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반탐오(反貪污)조사국(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배경

반탐오조사국은 1952년 설립되어졌는데 독립기관으로서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와 조사를 책임지고 있다. 1940년에서 1950년초까지 싱가포르는 부패와 무질서가 난무하였으며 부패와 뇌물은 싱가포르의 삶의 한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 당시 모든 부패사건은 싱가포르 경찰로 알려진 반부패브랜치(Anti Corruption Branch)에서 조사되었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질 못하였다. 특히 부패경찰관들에 의해 조사되니 반부패 실효성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모든 부패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조직부서로서의 설립이 제기되었으며 싱가포르정부는 이와 같은 점에 의거 반탐오조사국을 설립하게되었다. 초창기 반탐오조사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반부패법이 부적절하고 개인의 부패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분야의 지원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는데 공무원 대다수가 반탐오조사국에 대해서 효과성을 의심하였고 협

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렵게만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1959년 집권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즉 부패관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도하였고 부패관료는 공직에서 추방하기에 이르렀다. 반탐오조사국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는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성립되게 되었다.

2) 입법(Legis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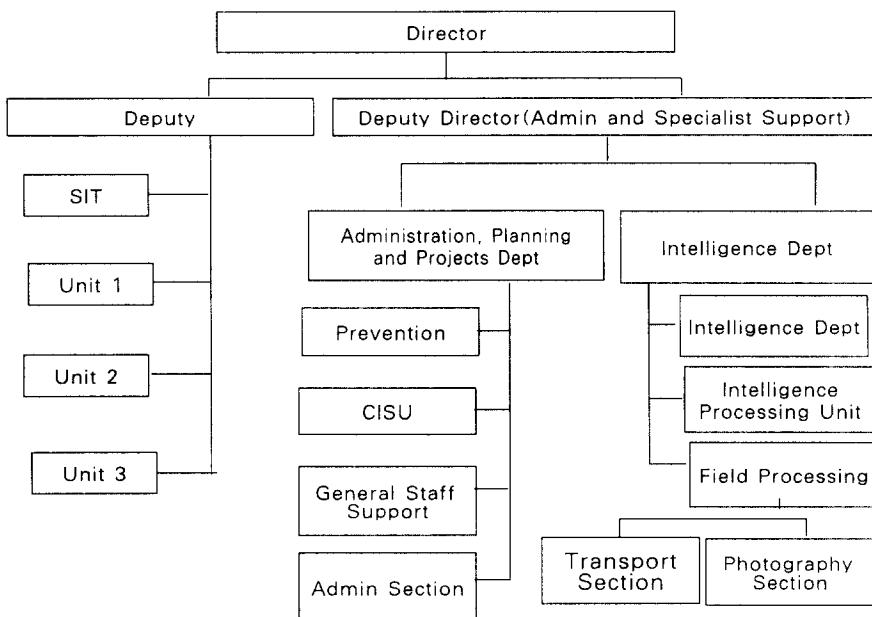
1960년에 싱가포르정부는 부패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임 법률을 제정하였다. 소위 반부패법이라 불리는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반탐오조사국에는 조사권이 부여되었으며 처벌도 강도 높게 규정되었다. 부패방지법은 241챕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날 반탐오조사국이 모든 부패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1989년에는 부패법(The Corruption Act: confiscation of benefits)이라 불리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법원에 부패사범들이 획득된 각종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3) 조직과 기능

싱가포르가 부정부패를 완전 추방하게 된 것은 우선 엄격한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된다. 60년 제정된 「부정부패방지법」은 정치인·공무원들의 부패를 강력하게 방지하고 있다. 싱가폴 수상직속으로 설치된 반탐오조사국은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감시해 구조적인 부조리를 척결하도록 하였다.

반탐오조사국은 수상의 직속 하에 있다. 반탐오조사국은 49개 오피서로 구성되는데 국장, 2명의 부국장, 5명의 조리서장(Asstistant Director)이 있으며 41명의 특별조사관(Special Investigator)이 있다.(표 3-3 참조) 반탐오조사국은 2개국이 있는데 운영국(The Operation Division)과 행정 및 특수지원국(Specialist Support Division)이 있는데 각국은 부국장의 명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반탐오조사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 영역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자의 비리를 접수하거나 조사한다. 둘째, 공무원에 의한 부정과 비리를 조사한다. 셋째, 부패행위 기회를 축소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에 있어서 처리 및 절차를 검사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한다. 반탐오 조사국은 공직 부정행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도 조사 범위로 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에 관련된 정보가 접수되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은행계좌, 주식지분, 동산구입, 지출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기록,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김병철, 1996)

〈표 3-3〉 싱가포르CPIB 조직체계도



자료 : 싱가포르 CPIB, Introduction, 2000

3. 말레이지아

1) 반부패조사청 개요

말레이지아의 반부패조사청 (Anti Corruption Agency) 은 수상실 직속 기관 중의 하나로서 1967년 10월 1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깨끗하고 능률적이고 신뢰받는행정을 창조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ACA ANNUAL REPORT,1999)

이러한 목표에 따라 반부패 조사청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일소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다. 반부패 조사청의 사무총장은 수상에 의해 임명되며 2명의 사무총장이 보좌하고 있다. 반부패 조사청은 8개의 국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말레이지아 14개주의 수부가 있다.(도표1-4참조) 반부패 조사청은 국가의 법률이나 정부 규율을 위반하는 권한 남용과 모든 부패 형태를 척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부패 없는 말레이지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말레이지아정부는 깨끗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 신뢰에 바탕을 두며 높은 정신적 도덕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패 일소에 혼신하는 세계적 기관으로서 반부패 조사청은 전문가적 직업 수행을 위하여 정의의 원칙과 청렴성

을 유지하고 문제해결에 단호한 결정을 기한다. 말레이지아 반부패조사청은 부패처결을 위하여 통합적인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말레이지아 모든 기관과 중요 정부 기관들은 국가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실행을 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련된 법률과 규정의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 비정부기구들은 말레이지아 사회에서 부패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패를 혐오스런 것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하며, 높은 도덕적 가치를 견지하고 성숙시키는 과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부패방지관련법규

1961년(1971년 개정)에 제정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은 주요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그 대상 폭이 넓다는 점이다.

1998년에 반부패법(Anti Corruption Act 1997)이라 불리는 신 ACA법이 탄생되었는데 이 법은 1961년의 부패방지법과 1982년의 반부패기본법(Anti Corruption Agency Act 1982), 그리고 긴급훈령(EMERGENCY ORDINANCE)을 확대한 것이다. 1997년의 반부패법에 의해 부패혐의자에 있어 조사기능과 처벌기능이 탄생하게 되었다. 1998년도 말레이시아 반부패조사청에 의해 조사된 사건은 총 1,117건이었고 체포된 사람만 300명이나 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98년 반부패조사청이 수행한 청렴성조사는 17,104명이나 되었다.

3) 기능

〈기능〉

말레이지아의 반부패조사청은 부패와 권력남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위해 개방된 조사를 통하여 얻게 된 정보를 기초로 고발을 한다.

부패 커미션의 충분한 증거를 위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획득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권리 남용과 오직 행위는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조사를 행한다. 공익과 정의는 법률과 규율하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되며 또한 권리남용과 부패사건에 있어 엄정한 재판과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 현장과 직무 규정에 위반하게 된 관리들의 징계처리를 다루는 공.사 영역분야의 장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부패나 권한 남용의 기회는 취약한 관리 시스템이라는 반부패조사청의 조사결과와 분석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이를 일소하는 방법과 역할을 강구하는 기능을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나 권한 남용에 관련되지 않는 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반부패조사청에서 확실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공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의 직을 충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영예로운 상이나 서훈, 선별적 퇴직, 승진 등을 반부패조사청이 자문한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단체나 공공기관의 조직리더에게 권력남용과 반부패를 위하여 계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고양시키고자 노력하며 각종 정보수

집이나 수사, 부패방지를 위해, 국가라든지 세계적 수준의 기관과의 협력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 훈련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반부패 조사청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반부패 조사청 직원들의 전문성과 연대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훈련 프로그램과 진취적인 리더쉽을 개발하고 있다. 반부패 조사청의 직원들이 인력관리 프로그램 발전이나 정보기술, 부서관리 및 체계적 직무과정을 위해 양질의 리더쉽 훈련을 고양시키고 있다.

〈전략〉

1) 강화 전략

반부패 조사청의 직무 효과성을 고양하기 위해 반부패 조사청 관리의 직업화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반부패법 시행 기관이나 언론매체들과의 협력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2) 방지전략

방지 전략은 도덕적 가치를 고취시키는 노력을 강조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법규를 시행함으로써 혼들림 없는 감독 시스템을 수립한다.

3) 시행 전략

반부패 조사청은 이미 알려진 공무원수입의 과도한 재산 소유가 발견되었을 때 증거 분에 관해 기소되며 처벌 되도록 한다. 과다수입 자료를 만족스럽게 증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압류를 시도하고 뿐만 아니라 반부패 조사청 조사에 있어서 부패방지의 노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나 조직리더의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도록 설득하며 이를 위해 계획적이고 협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 되도록 노력한다.

〈중요 행위〉

- 조사 정보 기소 보도, 교육
- 정책 기획 조정 감독 관리, 행정

〈고객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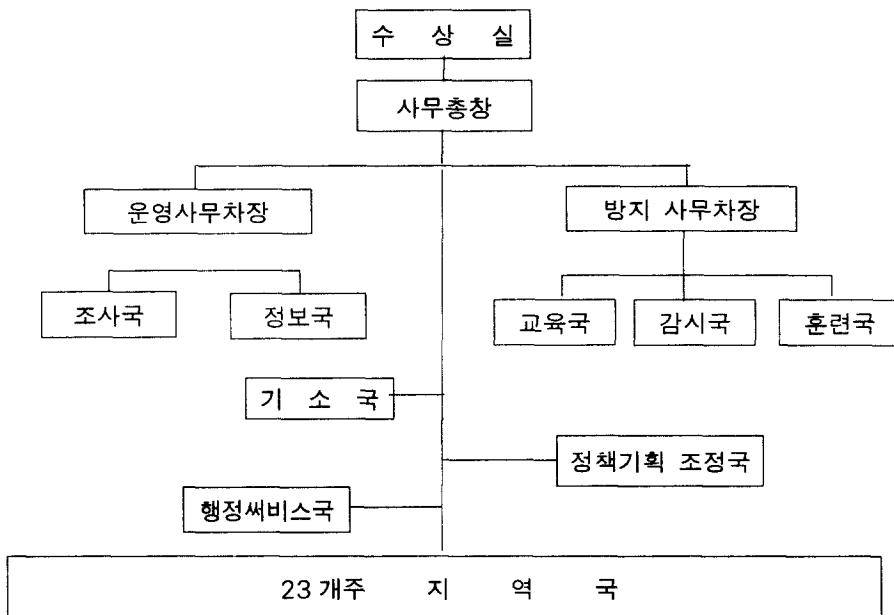
고객에게 편견없이 확고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서약한다.

부패에 관계된 충분한 혐의자들과 정보제공자의 비밀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과정을 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부패조사가 객관적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신중한 절차수행이 되도록 한다. 모든 부패사건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 되도록 노력한다.

반부패 조사청과 정부 그리고 국가는 부패사건에 관해 편견 없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나 보도에 부패관련 정보를 보장한다.

〈표 3-4〉 말레이지아 반부패 조사청 조직구조



자료 : 말레이지아 반부패조사청, Annual Report 1999

IV. 반부패제도의 비교 분석

홍콩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받아오다 1997년 1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중국으로 반환된 특별자치구이며,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독립된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서 현재 고속도 총리의 인민행동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홍콩은 영국에 반환 후 중국의 특별 행정자치구로서 동전화 행정장관이 통치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반부패를 위한 정부기관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 수상실, 검찰, 경찰, 감사원, 엄정공서, 반탐오조사국, 반부패조사청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각국의 법률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감사원법이 설립되어 회계, 감사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은 한국의 감사원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부패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좀더 강력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감사원이 수사 기능이 없고 비위관련자를 검찰에 고발만 하지만 홍콩의 염정공서나 반탐오조사국은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검찰의 영장 신청과 법원의 영장발부가 꼭 필요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한국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부패 사건을 수행하고 처리하고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1974년에 창립되었고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은 1952년에 설립되어졌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조사청은 1967년에 설립되어졌다. 한국의 감사원은 이보다 먼저 1948년에 창립되었다. 1993년에 한국의 감사원은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부정방지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김대중정부에서는(1999년)부패방지 자문기구로 반부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기구인 ACB(Anti Corruption Branch)는 1937년의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의 한 부분으로 탄생하였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부패방지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유사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감사원이나 검찰은 강력한 권한과 기능 역할이 주어졌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기 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감사원이 800여명에 불과하지만 홍콩의 염정공서는 1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한국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소속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조사청,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은 수상직속하에 있고 홍콩의 염정공서도 총독하에 있는데 한국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의 공무원들의 독직문제뿐만 아니라 뇌물, 사기, 절도, 횡령, 선거뇌물, 세금포탈, 불법적 마약거래, 도박, 기업의 불법행위까지 폭넓게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1960년에 홍콩은 1948년 태국은 1975년에 이미 법을 제정하여 부패방지에 나섰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1961년도에 법을 제정하였고, 인도 1947년, 미국과 영국도 관련 법규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반부패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표 5-5. 각국의 반부패입법제도비교 참조)

V. 한국반부패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내 용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개혁 과제로 내세운 부패개혁은 환란위기로 인한 국내의 복잡한 사회혼란과 정치불안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은 놀라우리만큼 경제성장을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왔는바 이것이 김영삼 정

자료 : 김영종, 부제석, 1998, p.238, Lediwina v. Carino, Bureaucratic Asia :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s, 1986

부 들어와서 유착성 권력부패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외환 위기 사태로 인해 잠시 주춤거렸는데 지속적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정경 유착의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999년 2월 OECD의 부패방지 협약 발효와 함께 부정부패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패척결이 당위론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환란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신인도회복이라고 판단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이러한 위기의 원인과 배경에는 정경유착성 부패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패척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신뢰받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정하였다.

특히 부패통제를 처벌위주의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에 그 역점을 두었고 부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행정제도, 환경, 기구, 국민의식, 사후통제 등에 대한 총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반부패기본법을 입법화를 시도하였고 반부패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치중하였다.

첫째, 부패취약분야의 행정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 세무 건설 건축 위생 소방 비리 등에 대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부패방지 인프라(infra structure)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부패방지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셋째, 부패척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기능을 중시하였으며 시민들의 감시 고발기능이 강화되었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넷째, 부패척결을 위해 국민의 정부 모토처럼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민간주도의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반부패정책 평가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 방지는 다원화된 체계로 되어있다. 공무원의 부패 통제와 관련된 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중앙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직되어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전국의 지방단체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법구조는 오히려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적실성 마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패방지제도는 감사기관 상호간의 중복성과 갈등의 문제도 야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국에 500여 기관의 각 행정부처의 자체감사기관은 최고 감시기관인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어 있어서 심할 때에는 공무원들은 감사노이로제(?)에 걸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가의 수사권을 가진 사정기관인 검찰기관도 사정의 범위를 두고 종종 갈등을 일으켜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

회가 공직자 재산을 심사한 경우, 법위반한 자를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요구를 한 것은 단1명에 불과하였고 경고조치는 12명에 그쳤다. 반면에 국회의 공직자 위원회는 단3명에게 경고시정을 하였고 그리고 대법원의 공직자위원회는 단 2명에게 경고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갑자기 고양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는 오랫동안 우리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았다. 부패의 나무는 시민이 공급하는 뇌물과 유인의 토양과 물에서 성장한다. 사실 부패는 부패문화가 공범이다. 예컨대 오랫동안 “성금”과 “떡값” 관행과 문화는 바로 정경유착이란 정치부패의 나무를 자라게 한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반부패는 일파성, 일회성, 전시적 처방이 많다. 즉 과거 정부들이 부패 통제를 일파성 성격의 사정작업으로 시도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반부패정책도 지속성 있게 시도하지 못하는 등 부패척결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초 부패방지를 위해 제도적·입법적·사회 문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도 있게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패문제가 심한 건축, 건설, 세무, 경찰, 환경, 위생분야에 대한 방지를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대안을 마련했으며, 각종 입법 등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부패방지기본법, 돈세탁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특별검사제 실시 등이 여야의 침례한 대립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정치분야의 정치개혁입법이 흐지부지 되는 등 문제점을 노정 시켰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반부패특위설치, 시민감사제 도입, 각종 행정규제 개선,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및 시행 등 부패근절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어느 통치권자에 비해 부패척결에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개혁과 지속적인 사정을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정부도 과거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시적 충격요법의 성격이 짙고 사정위주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점이 노정 되었다. 이와 같은 면은 각종 제도개혁의 방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반부패 특별위원회의 설립운영에 논란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반부패특위는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사정정책 등에 대해 심의, 권고하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고위공직자의 사정과 경제비리에 대해서도 관여하며 대통령이 자문내용을 수용하여 부처에 지시한다고 출범당시 포부를 밝혔던 특위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민간위주의 비상설기구가 지니는 전업성의 제약과 한계, 검찰 감사원 청와대등 사정기구간의 주도권 다툼,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와의 기능 중복등 부패방지시스템의 혼란과 역효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재완, 1999)

VI. 반부패제도의 새로운 방향

한국공직부패의 방지를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부패관련 각종 법규를 일원화한다든지 새로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실성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 말레이지아의 반부패청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능을 도입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지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 및 기구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감사원과 검찰기관의 독립성보장방안

감사원이나 검찰이 공무원부패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어느기관이나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부패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염정공서 소속 부패방지위원도 자기업무에 관해서는 여타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 역시 독립적으로 부패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시에는 영장없이 체포한다든지 구금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각종부정부패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기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기관이 그동안 권력의 눈치나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검찰기관이 준사법 기관이라 하지만 법무부소속기관이라는점,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수사시에는 검사장이 상의 검찰지휘품신을 받아 수사처리하는 점 등 그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부패사건에 대한 처리를 변상책임판정이나 징계요구시정 그리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만 수사기능이나 사법경찰권이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책은 한계에 봉착될 수 밖에 없다.

1) 감사원의 부정부패방지 강화 방안

우리나라 감사원은 막강한 직무감찰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후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정부패 방지기능은 미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전, 예방적 부정방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원 기구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은 현재 직무감찰에 관한局이 하나밖에 없고 인원도 적어 이들 인원으로 전 공무원을 감찰 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의 인원의 증원과 기구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권한을 부여하고 감사원에 직무감찰 정보국을 설치하여 비위공무원의 첨보수집활동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감사원법의 개정을 통해 직무감찰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하고 각급 행정관청의 감찰기구를 통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입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감사관은 감

사원에서 파견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원 분원을 각 시·도에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무감찰의 기능부여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이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송사리만 잡지 권력부패의 큰손은 잡지 못하고 있다.

넷째, 감사원이 해야 할 또 다른 시급한 과제는 정부실패의 원인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추진하는 정책감사 또는 성과감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집행 수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안문석, 1998)

이외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하여 국회소속으로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공직부정에 관련된 예금계좌 추적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감사원의 기능강화와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도 헌법이나 감사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검찰의 기능제고방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는 자유당시대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해 줄곧 제기돼 온 과제이다. 특히 공권력의 상징이랄 수 있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관집 웃로비사건이나 동방사건 그리고 최근의 검찰간부에 대한 탄핵발의시 최고조로 달하였다. 검찰에 의한 공권력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민주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아직도 검찰의 중립화가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공권력의 정치적 초연성이란 문제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조직을 장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검찰을 통한 자치단체장 길들이기 수사가 노출된다든지, 선거사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측 후보 또는 미윤톤이 박힌 후보에게 집중된다든지, 구체적 물증이 제시된 여당 후보의 선거부정사례는 아예 묵살하거나 형식적으로 수사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오늘날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부정을 척결하고 인권을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이 특별검사 제도 도입이라는 문제로 김대중정부에서 비중 있게 논란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초연하게 보장되질 않았기 때문이다.

① 인사제도개선

검찰 총장이나 검찰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실력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한국검찰인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에 있어 음양으로 도움을 받은 검찰간부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의 검찰 행태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검찰이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검찰청 내부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보직하도록 합이 타당하다. 또한 검사의 직급과 직급정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승진 등 출세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으므로 상사나 영향력이 있는 정치권력에 영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직급체계의 개선과 직급정년제의 폐지가 필요하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끝나고 3년 이내에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상으로는 시민단체나 외부인사가 함께 참

여하는 검찰인사제도위원회에 인사권을 맡겨 평검사들이 장관과 총장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함정호, 1996)

② 대통령비서실 파견제도 폐지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검사(사정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등)가 검찰에 복귀하여 총장이나 기타 중요한 간부직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은 자연 정치에 물들게 되고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수호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검찰업무를 직접 지휘할 권능이 없는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김대중정부 들어서도 대검의 검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고 검사장출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등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다른점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잠시 근무하다 검찰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검찰 길들이기 구습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전두환정권 시절에는 판사까지 파견하여 사법부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위해서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보다는 채야빈호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소 독점제도에 대한 견제

현행 법제하에서 고소, 고발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하였을 때 이에 불복 할 수 있는 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상급검찰청에 대한 항고, 재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고, 그외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길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한다 할지라도 검사동일체로 단결된 검찰조직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를 위해 민간인도 참여해 검찰의 불기소결정 등의 재심을 요구하는 「검찰심사 회제」와 같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검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제의 도입도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패방지법 제정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에서 부패방지법제정 촉구를 시도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갔는데 부정부패가 구조화 되어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개별적인 현행법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은 부정부패에 관한 방지법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하여 체계적으로 부패방지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1996년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반부패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자 국가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현 여당은 야당 시절 이 법의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도 수 차례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였던 반부패기본법은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기본법에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의 의무, 공직윤리 및 공직자행동강령의 제정근거,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민감사청구제도 등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여·야가 특별검사제와 내부고발자법으로 대립하여 수포로 돌아갔다.¹⁾

현재 아시아 각국은 부패척결을 위하여 부패방지입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60년에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홍콩도 1948년에 입법조치하였다. 말레이지아도 지난 1961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홍 콩

부패방지법 : 입법국회의원, 공기업과 사기업의 종업원 정부관료의 부패행위에 최고5년에서 벌금형, 부패상설위원회 설치.

뇌물방지법 : 염정공서

○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 CPIB 특수수사권 부여, 부패사범최고7년 및 벌금

○ 말레이지아

부패방지법 : 부패사범5년이하 징역 및 벌금

3. 국제연계프로그램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검찰은 철저한 독립성의 바탕위에 정경유착 및 마피아와 유착된 정치인들을 과감히 수사하여 전후 50년간 지속되어온 과두지배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일본과 이태리의 검찰의 공통점은 부패척결의 소명의식, 직무상 중립성, 독립성의 추구, 그리고 국민의 성원이 뒤따랐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오로지 총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일반 정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확고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염정공서는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죄뿐만 아니라 부패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공공분야나 시민들에게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염정공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부패 공직자에 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도 부폐추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이 부폐척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반부패정책의 사례나 제도를 도입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

1) 부폐방지법안12조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룰 조사처 신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관 차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가안전기획부부장 차장 정부조직법상의 처와 처의 장 차관급이상의 자치단체장 경찰청장· 차장 시도지방경찰청장 법관 검사 군장성 위와 같은 직위에 있었던 그 친족· 호주 기타 국회의원 재적3분의1 이상의 결의로써 수사를 요청한 자와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사원이 수사의뢰한 자의 부폐행위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의 직수행

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조사청과의 반부패정책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한국의 반부패특위를 비롯하여 검찰이나 감사원 그리고 여타 사정 기관의 공직자들을 선발하여 이들 나라의 반부패 노하우를 습득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반부패기구 쇄신 및 신설

반부패기구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효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여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수사의지와 시민들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권력형 정치부패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척결을 기약할 수 없다. 효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반부패조사활동을 전개한다면 국민의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다. 사실 부패세력은 관료조직 내에 뿐만 아니라 있고, 언제나 부패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한 최소요건은 반부패기구가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패사정기구가 국민적신뢰도에 있어 매우 많은 문제를 드러냈는데 이는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다”는 식의 시민적 감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형 부패와 관련된 검찰의 태도는 정치권력자들의 눈치 보기에 익숙하고 부패수사 또한 매우 답보적인 상태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다.²⁾ 이와같은 현실에 의거 새로운 부패조사기구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부패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이 부패척결에 가장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홍콩이 염정공서를 가지고 사정작업을 하는가 하면 싱가포르는 반탐오조사국으로 부패척결작업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반부패조사청이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시아 각국은 부패방지를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에 기대하지 않고 부패방지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기구의 반부패조사기구를 신설하여 공무원부패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창국변호사는 『현재의 검찰 조직으로는 청와대나 여권 핵심인사등을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칭)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는데 차제에 한국도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조사청(ACA),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같은 조사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검찰의 비판은 한보비리사건, 옷로비사건, 동방금고불법대출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절정에 이르렀는데 1997년초 한보사건시 한시민은 검찰의 행태를 '마피아의 총대로 만든 것대'로 까지 비난하고, '검찰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시민광고를 게재하기까지 했다. 검찰제도의 개혁방안으로는 시사월간지 WIN, 1997.5.〈특집〉 위기의 검찰, 140~165쪽; 한인섭,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166~171쪽 참조

VII. 결 론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지아의 부폐방지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나라의 제도적 대안을 살펴본 것은 우리나라가 부폐방지의 인프라 스트럭쳐가 비효율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폐해가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의 반부폐제도 중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 반탐오조사국이 부폐사건을 조사하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노력은 한국에 있어서 반부폐제도를 개선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시사점내지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가 아무리 작은 부폐 사건이라도 반드시 조사해 단죄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부폐추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신뢰를 유도하는 노력을 계울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홍콩의 염정공서가 반부폐제도의 대명사가 된 것은 홍콩정부와 시민들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과 성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반탐오조사국의 강력한 법 시행은 부폐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본연구자도 이 기관의 수사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말레이지아도 공직자의 뇌물행위나 재산증식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부폐가 척결되지 않는 커다란 이유는 반부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충격 요법식 사정이 실행되었다는 점이고 부폐사정기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조정기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나 유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외에도 시민이나 정부, 관료들을 위한 반부폐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홍콩의 염정공서는 반부폐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라디오나 TV방송에 계도 및 예방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한국부폐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부폐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것을 아시아 국가의 부폐방지제도에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철(1996). “외국의 공직부정부폐 방지제도와 그 운영” 감사 46호
- 김영종(1993). 공무원 부폐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기본방안.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김영종(1998). 부폐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 김철수(1996).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부정부폐 방지 감사”. 감사
- 류상영(1999). “부폐라운드와 정부-기업관계” 세계경영과 윤리경쟁력. 중앙일보사 기업윤리심포지엄
- 박재완(1999). “반부폐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추계학술세미나.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박홍식(1999).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 안문석(1998) "행정개혁과 감사원의 과제" 감사
전수일(1999). 공무원 윤리규범과 행동기준에 관한 연구: 선물, 접대 및 이익수수의 한도를
중심으로, 부패학회보, 제4호
한국부패학회보(1999), 제4호
함정호(1996),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지, 8월호 .ACA(1999), ANNUAL REPORT
Ackerman, Susan Rose(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atas, S.H.(1990), Corruption : Its Nature, Causes and Funtions, Newcastle : Athenaeum Press
Ltd.
Allan PETER(1922) "Empirical Knowledge on Strategies for corruption Control", Presented
at 5th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 Amsterdam, Netherlands, pp. 130
Buckle, J. E.(1992), "Expected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ization for Corruption in
Different Regions", Amsterdam, netherlands, p.2
Caiden, GERALD G. (Nov/Dec.1991), "What really of public maladministr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1, No.6, pp. 486 ~ 493
Carino, LEDIVINA V. (1986), Bureaucratic Corruption in Asia :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s, Quezon City : JMC Press, Inc, pp.114
CPIB(2000), CPIB Introduction
Edelman, Murray(1985), The Symbolic Uses of Politics Urbana: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Frederickson, H. George(1993),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 M.E Sharp, Inc.
Gorta, Angela(1994), Unravelling Corruption : A Public Sector Perspective NSW : ICAC
Heidenheimer, Arold j.(1978),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Brunswick : Transation Books
ICAC(1999), ANNUAL REPORT
Holmes, Leslie(1993),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 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im, Yong Jong(1993), "Preventing Corruption in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among
korea, Singapore and Hong Kong".Proceedings of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ancun Mexico : 405 ~ 408
Kim, Yong Jong(1994), "The Ethical Strategies in the Public Service : A Comparation
Perspective among Korea, China,Thailand, Philippines, Singapore, and Hong Kong".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Ethics, Stockholm,Sweden:1 ~ 20
Klitgaard, Robert(1998),Controlling Corruption, Berkely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nion,Melanie(1996),"Corruption by Design : Bribery in Chinese Enterprise Licencing."
Journal of Law,Economics and Organization 12 : 167 ~ 195

Mauro, Paolo(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OECD

Quah (1989), "Singapore's Experience in Curbing Corruption", in Arnold Heidenheimer,
Political Corruption:A Handbook(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p. 842

Rooke, Peter(1996) Global Anti Corruption Movements : The Role for Civil Society, PSPD, 2~26
Syed Hussein Alatas(1990),Corruption : Its Nature, Causes, and Functions, Gower

Publishing Company, Aldershot, England, Broofield, USA

Tanzi, Vito and Hamid Davoodi(1998), Road to Nowhere: How Corruption in Public
Investment Hurts Growth, IMF

SINGAPOR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MALAYSIA,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전문가면담〉

K.M. Chan, Assistant Director, Corruption Prevention-ICAC

Laurence Lin Reug Lovy, Chief Special Investigator-CPIB

Haji Mustafar Bin Haji Ali. Director,Planning& Coordination Division-ACA